◉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-1호

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

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제11조, 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1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은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 10킬로그램당 26,750원(쌀 80킬로그램당 214,000원)으로 고정함을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9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'19.12.31. 이후 2018년산 및 2019년산 쌀의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은 이 고시에 명시된 금액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목표가격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-10호)은 폐지한다.

제4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◉농림축산식품부고시제2020-2호

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

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 당 지급금액

2018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 당 지급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9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○ 쌀 80킬로그램 당 지급금액 : 2,544원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종전의 「2017년도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등록자에게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」(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-9호)은 폐지한다.

제3조(존속기한) 이 고시는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변동직접지불금의 쌀 80킬로그램당 지급금액을 새로이 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◉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0-2호

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「한상드림아일랜드」 개발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

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44호(2017.11.23.)로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지구 「한상드림아일랜드」 개발사업에 대하여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6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, 이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9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□ 변경사유

○ 해양수산부 추진사업인 '인천항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' 의 변경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수처리시설의 비용 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(인천시, 인천경자청) 협의 및 금융사, 시공사선정 등의 기간 소요에 따른 착공지연으로 총 1년 9개월의 사업기간 연장('20.12.31→'22.9.20)과 한상드림아일랜드 사업의 국비(해수부) 지원항목* 중 진입도로 확장(2차선→4차선)과 인터체인지(인천공항방면) 건설비 증액에 따른 국비변경

*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의6(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) 의제처리 규정에 따라 단위개발사업지구로써 개발계획 변경 반영

□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

1. 경제자유구역(지구)의 명칭·위치 및 면적 : 변경

가. 경제자유구역(변경없음)

나. 단위개발사업(변경)

• 명 칭 :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국제도시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

• 위 치 :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995 일원 (영종도 제1 준설토투기장)

• 면 적 : 기정) 3,315,607.8㎡ 변경) 3,327,015.8㎡ (증 11,408.0㎡)

2.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: 변경없음

3. 개발사업의 시행자 : 변경없음

4.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: 변경

가. 개발사업 시행방법(변경없음)

나. 개발계획 목표연도 및 단계별 계획(변경)

○ 사업기간

• 기정 : 2014년 ~ 2020년

- 1단계 : 2014년 ~ 2018년 (1단계 부지조성공사)

- 2단계 : 2018년 ~ 2020년 (2단계 건축 및 시설공사)

• 변경 : 2014년 ~ 2022년 9월 20일

- 1단계 : 2014년 ~ 2022년 9월 20일 (1단계 부지조성공사)

- 2단계 : 2020년 ~ 2022년 9월 20일 (2단계 건축 및 시설공사)

○ 단계별 시행계획

• 기정 : 1단계('14 ~ '20.12.31)

• 변경 : 1-1단계('19.3.21 ~ '21.9.20), 1-2단계('21.9.21 ~ '22.9.20)

5. 재원조달방법 : 변경

가. 재원조달방법 : 변경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총사업비	국 비	민 자	비 고
기정	404,582	69,760	334,822	
변경	410,375	82,052	328,323	

나. 사업비 내역 : 변경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사 업 비			비 고
	기정	변경	증감	
① 조 사 비	800	800	-	
② 설 계 비	9,793	10,650	857	
③ 공 사 비	253,951	283,232	29,281	
부지조성공사	167,525	154,685	-12,840	
진입도로공사	19,575	28,200	8,625	
상수도인입시설공사	6,011	6,011	-	
신설IC공사	42,999	52,488	9,489	
철도역사신설공사	17,841	17,841	-	
하수처리시설	-	24,007	24,007	
④ 판 매 비	4,812	-	-4,812	
⑤ 부 대 비	20,524	18,812	-1,712	
⑥ 부 담 금	29,903	8,018	-21,885	
⑦ 영 업 준 비 금	-	-	-	
⑧ 제 세 공 과 금	34,408	45,876	11,468	
⑨ 일 반 관 리 비	9,065	8,504	-561	
⑩ 예 비 비(물가변동비)	22,516	18,921	-3,595	
⑪ 건 설 이 자	18,810	15,561	-3,249	
⑫ 총 사 업 비(①~⑪의 합계)	404,582	410,375	5,793	

다. 연도별 투자계획 : 변경

○ 기정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총사업비	404,582	10,400	10,000	-	-	43,729	62,019	111,721	166,712
민간투자	334,822	10,400	10,000	-	-	36,343	52,039	116,434	109,607
자기자본	102,100	10,400	10,000	-	-	19,629	3,031	59,040	-
분양대금	-	-	-	-	-	-	-	-	-
타인자본	232,722	-	-	-	-	16,714	49,008	57,394	109,607
기반시설 (국비지원)	69,760	-	-	-	-	7,386	9,980	10,133	42,261

○ 변경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	합 계	2018년 이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1단계	총사업비	246,631	20,400	10,412	37,994	72,407	405,418	-
	민간투자	246,631	20,400	10,412	37,994	72,407	405,418	-
	자기자본	68,806	20,400	10,412	37,994	-	-	-
	분양대금	-	-	-	-	-	-	-
	타인자본	177,825	-	-	-	72,407	105,418	-
	기반시설 (국비지원)	-	-	-	-	-	-	-

구 분		합 계	2018년 이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2022년
2단계	총사업비	81,692	-	-	-	-	33,295	48,398
	민간투자	81,692	-	-	-	-	33,295	48,398
	자기자본	33,295	-	-	-	-	33,295	-
	분양대금	-	-	-	-	-	-	-
	타인자본	48,398	-	-	-	-	-	48,398
	기반시설(국비지원)	-	-	-	-	-	-	-
전체	총사업비	410,375	27,308	17,161	47,994	91,872	158,177	67,863
	민간투자	328,323	20,400	10,412	37,994	72,407	138,712	48,398
	자기자본	102,100	20,400	10,412	37,994	-	33,295	-
	분양대금	-	-	-	-	-	-	-
	타인자본	226,223	-	-	-	72,407	105,418	48,398
	기반시설(국비지원)	82,052	6,908	6,749	10,000	19,465	19,465	19,465

라. 재원조달계획 민간투자부문 : 변경

구 분	기 정		변 경		비 고
	금액(백만원)	비율(%)	금액(백만원)	비율(%)	
자기자본	102,100	30.5	102,100	31.1	변동없음(억단위 이하 반올림)
타인자본	232,722	69.5	226,223	68.9	6,499 백만원 감소
분양대금	-	-	-	-	타인자본과 분양대금 관련 재원조달계획의 변경은 사업초기단계에서 선분양 대금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,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하여 타인자본(PF대출)을 통한 재원조달계획을 확정하는 것으로 변경함
합 계	334,822	100.0	328,323	100.0	

마. 기반시설 : 변경

(단위 : 백만원, VAT별도)

시설명	규모	지원검토액(예상)		비고
		기정	변경	
① 진입도로 개설	◦ L=1.7km, B=22.0m(4차로), 교량 1개소/90m	19,575	28,200	
② 상수도 인입	◦ L=8.5km, D=500mm	6,011	6,011	
③ 고속도로 I.C (영종방면) 개설	◦ L=1.6km(1차로), 영업소 포함	20,088	30,000	
④ 철도역사 신설	◦ 선상역사 설치 (복선, 교량 L=55m, B=9m)	17,841	17,841	
물가변동비		6,245	-	2013년 12월 31일 기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
합계		69,760	82,052	

6. 토지이용계획 : 변경

가. 용지별 개발계획 : 변경

○ 근린생활시설용지

- 국가별 문화, 향기 및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세계문화 쇼핑공간 도입
- 이용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분산배치

・문화체험형 스트리트몰, 편의시설, 상가 등

○ 상업시설용지

- 관광객의 구매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쇼핑시설 도입 및 수변체험공간 제공 및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수변 특화거리 조성
- 글로벌 비즈니스행사를 지원하는 컨벤션센터 및 호텔 도입
- 복합쇼핑몰, 해변데크 및 해변무대, 휴게소, 국제컨벤션센터, 비즈니스호텔(특1급) 등

○ 관광시설용지

- 해양생태문화 체험을 위한 워터파크 및 아쿠아리움 도입과 급증하는 의료관광 수요시장 유치를 위한 관광호텔, 헬스케어센터 등 계획을 통해 휴양형 관광레저 공간 조성
- 관광ㆍ의료시설, 유원지 등 접근성 및 수변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배치
- 해양리조트, 아쿠아리움, 워터파크, 관광호텔(특2급), 헬스케어센터, 메디컬스파, 골프장, 에코빌리지/영빈관 등

○ 공공시설용지

- 준설토 투기장은 공공성격의 토지로 공공성 유지를 위해 기반시설 부지를 최대한 확보(교육연구시설, 테마형 공원 등)
- 군사시설 및 인근지역의 기존 도서를 고려하여 토지이용 수립

・교육연구시설, 해양생태공원, 세계테마공원, 공공청사, 국방부제공부지 등

- 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

・하수처리시설, 하수도시설, 오수중계펌프장 등 신설, 진입도로 개설, 완충녹지 폭원 확보 등

나. 토지이용계획표 : 변경

구 분		기정		변경		증감 (㎡)	비 고
		면 적 (㎡)	구성비 (%)	면 적 (㎡)	구성비 (%)		
합 계		3,315,607.8	100.0	3,327,015.8	100.0	증)11,408.0	
근린생활시설용지		38,609.0	1.2	38,609.0	1.2	-	
상업시설용지		154,953.0	4.6	154,953.0	4.6	-	휴게소 : 4,639.0㎡
관광시설용지	소 계	1,846,157.0	55.7	1,846,157.0	55.5	-	
	유 원 지	164,138.0	5.0	164,138.0	4.9	-	해양리조트 : 81,077.0㎡, 아쿠아리움, 워터파크 : 83,061.0㎡
	숙 박 시 설	16,098.0	0.5	16,098.0	0.5	-	
	관광ㆍ의료시설	15,554.0	0.4	15,554.0	0.5	-	
	골 프 장	1,650,367.0	49.8	1,650,367.0	49.6	-	임대부지(400,000.0㎡) 포함

구 분		기정		변경		증감(㎡)	비 고
		면 적(㎡)	구성비(%)	면 적(㎡)	구성비(%)		
공공시설용지	소 계	1,275,888.8	38.5	1,287,296.8	38.7	증)11,408.0	
	교육연구시설	156,955.0	4.7	156,955.0	4.7	-	
	하수처리시설	-	-	11,220.0	0.3	증)11,220.0	
	오수중계펌프장	-	-	700.0	0.1	증)700.0	
	공 공 청 사	2,000.0	0.1	2,000.0	0.1	-	
	항 만 시 설	-	-	25,359.0	0.8	증)25,359.0	
	하 수 도 시 설	-	-	24,948.0	0.7	증)24,948.0	
	공 원	302,752.0	9.1	297,120.0	8.9	감)5,632.0	
	녹 지	260,570.0	7.9	235,93.0	7.1	감)24,634.0	완충녹지 : 222,282.0㎡, 연결녹지 : 13,654.0㎡
	도 로	179,111.8	5.4	183,211.8	5.5	증)4,100.0	
	광 장	202,399.0	6.1	197,760.0	5.9	감)4,639.0	
	주 차 장	2,540.0	0.1	2,540.0	0.1	-	
	공 공 공 지	9,027.0	0.3	9,027.0	0.3	-	
	기타공공시설	160,534.0	4.8	140,520.0	4.2	감)20,014.0	국방부제공부지 : 140,520.0㎡

7. 주요 기반시설계획 : 변경

가. 주요 기반시설 계획 : 변경

구 분		기 정	변 경	증감(㎡)	비 고
		면적(㎡)	면적(㎡)		
공공시설용지	도 로	179,111.8	183,211.8	4,100.0	○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진입 도로 개설
	주차장	2,540.0	2,540.0	-	-
	항 만	-	25,359.0	25,359.0	○완충녹지내 호안을 별개의 시설로 결정(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)
	공 원	302,752.0	297,120.0	-5,632.0	○하수도시설 및 오수중계펌프장 신설에 따른 면적 조정
	녹 지	260,570.0	235,93.0	-24,634.0	○지자체 협의의견 반영(도시공원법 규정 준수)
	공공공지	9,027.0	9,027.0	-	-
	광 장	202,399.0	197,760.0	-4,639.0	○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 및 완충녹지 폭원(10m) 확보를 위한 면적 조정
	하수처리시설	-	11,220.0	11,220.0	○자체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 신설 (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)
	하수도시설	-	24,948.0	24,948.0	○생태수로를 별도의 하수도시설로 결정 (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)
	오수중계펌프장	-	700.0	700.0	○도시계획시설로 결정 (관계기관 협의의견 반영)

나. 용수공급계획 : 변경

○ 생활용수

- 영종배수지에서 배수관(D500mm)로 사업대상지에 공급(L=8.5㎞)

○ 관계용수(중수)

- (기정) 운북하수처리장에서 미단시티내 도로(L=7.0㎞)를 경유하여 사업대상지로 공급
- (변경) 사업지구 내 신설하수처리시설 통해 공급
- (기정) 계획용수량 : 6,000㎥/일(여유량을 감안하여 적용)
- (변경) 계획용수량 : 8,000㎥/일(여유량을 감안하여 적용)

다. 오수처리계획 : 변경

○ (기정) 발생오수 전량 차집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을 통해 압송 후 운북하수처리장에서 처리

○ (변경) 사업지구 내 발생되는 오수전량을 차집하여 오수중계펌프장을 통해 본 사업지내의 신설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토록 계획

○ 우수관과 별도 자재사용으로 오접 방지

○ 중수공급계획(Q=5,000㎥/일)은 골프장 관개용수 및 조경용수로 공급하여 경제성 제고

○ 오수발생량 : 5,500㎥/일(여유량을 감안하여 적용)

라. 우수배제계획 : 변경없음

마. 전력공급계획 : 변경없음

바. 정보통신망 구축 : 변경없음

8.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: 해당없음

9. 교통처리계획 : 변경

가. 교통처리방안 : 변경없음

나. 도로계획 : 변경

구분	규모				기 능	연장(m)	기 점	종 점	사용형태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
기정	대로	2류	1	34~37.5	집산도로	1,077	대로3-1	사업부지 북측경계	일반도로	
변경	대로	2류	1	34~37.5	집산도로	1,140	대로3-532	사업부지 북측경계	일반도로	
기정	대로	3류	1	28~31.5	집산도로	1,294	대로2-1	사업부지 서측경계	일반도로	
기정	대로	3류	2	28~31.25	집산도로	533	대로2-1	대로3-4	일반도로	
기정	대로	3류	3	28	집산도로	236	대로3-4	대로3-1	일반도로	
기정	대로	3류	4	28~34.5	집산도로	658	대로3-1	중로2-1	일반도로	
기정	중로	1류	1	22~25.25	집산도로	981	사업부지 남서측경계	대로3-1	일반도로	
기정	중로	2류	1	18~25.5	국지도로	1,165	대로2-1	대로3-1	일반도로	
기정	중로	2류	2	16	국지도로	289	대로2-1	중로2-3	일반도로	
기정	중로	3류	1	14	국지도로	460	군사시설	사업부지 동측경계	일반도로	
기정	중로	3류	2	12	국지도로	420	대로2-1	대로3-4	일반도로	
신설	소로	3류	1	6	국지도로	314	대로2-517	사업부지 북측경계	일반도로	

10. 산업유치계획 : 해당없음

11. 보건의료・교육・복지시설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12. 환경보전계획 : 변경없음

13.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: 변경없음

14.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
15.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1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·건축물 또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 : 변경

○ 토지조서

일련번호	구분	소재지	지 번	지목	공부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 유 자		비고
							성 명	주 소	
1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2	철	52,096.2	5,383.0	국(국토교통부)	-	
2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3	도	122,958.3	16,793.0	국(국토교통부)	-	
3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1	잡	14,024.6	9,322.0	국(해양수산부)	-	
	변경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1	잡	14,024.6	9,360.0	국(해양수산부)	-	
4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2	도	32,916.5	25,680.0	국(해양수산부)	-	
	변경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2	도	32,916.5	25,728.0	국(해양수산부)	-	
5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3	철	12,956.7	7,432.0	국(해양수산부)	-	
	변경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3	철	12,956.7	7,464.0	국(해양수산부)	-	
6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4	도	26,499.6	19,000.0	국(해양수산부)	-	
	변경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4	도	26,499.6	19,048.0	국(해양수산부)	-	
7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5	잡	24,525.0	8,020.0	국(해양수산부)	-	
	변경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-5	잡	24,525.0	8,042.0	국(해양수산부)	-	
8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5	제	9,383.1	9,383.1	국(해양수산부)	-	
9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6	제	1,939.3	1,939.3	국(해양수산부)	-	
10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67	제	11,385.8	11,385.8	국(해양수산부)	-	
11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870	제	37,539.0	37,539.0	국(해양수산부)	-	
12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995	잡	2,961,886.3	2,961,886.3	국(해양수산부)	-	
13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1996	잡	134,317.3	134,317.3	국(해양수산부)	-	
14	기정	인천시 중구 중산동	산346-1	임	6,015.0	6,015.0	국(해양수산부)	-	
15	기정	미지정(공유수면)			-	61,512.0	-	-	
	변경	미지정(공유수면)			-	72,732.0	-	-	
합계	기정				3,448,442.7	3,315,607.8			
	변경				3,448,442.7	3,327,015.8			

17. 문화시설·공원·녹지계획 : 변경

가. 문화시설 : 해당없음

나. 공원·녹지계획 : 변경

○ 공원계획

구 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비고
			기정	변경	
합계			302,752	297,120	감) 5,632㎡
기정	근린공원1	대로2-1 서측일원	40,796	40,796	-
변경	근린공원2	대로2-1 서측일원	94,263	89,331	감) 4,932㎡
기정	근린공원3	대로2-1 동측일원	32,756	32,756	-
기정	근린공원4	대로3-2 남측일원	17,413	17,413	-
기정	근린공원5	중로3-2 남측일원	16,691	16,691	-
변경	도시생태공원	대로3-1 남측일원	100,833	100,133	감) 700㎡

○ 녹지계획

구 분	시설의 종류	위 치	면적(㎡)		비고
			기정	변경	
합계			260,570	235,936	감)24,634㎡
변경	완충녹지	중로1-684 서측일원	28,841	29,575	증)734㎡
변경	완충녹지	중로1-684 동측일원	172,519	147,160	감)25,359㎡
기정	완충녹지	중로1-684 동측일원	14,159	14,159	-
기정	완충녹지	대로3-532 남측일원	2,627	2,627	-
기정	완충녹지	대로2-517 서측일원	28,761	28,761	-
변경	연결녹지	대로2-517 동측일원	13,663	13,654	감)9㎡

18. 도시경관계획 : 변경없음

19.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20.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: 해당없음

21.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: 변경없음

22.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 계획의 경제성 검토 : 해당없음

23. 토지소유자에게 환지할 토지가 있는 경우 환지에 관한 계획 : 해당없음

24. 관련도서의 열람방법

○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한 관계서류와 도면 및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개발투자지원팀(044-203-4649),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(044-200-5982),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개발과(032-453-7582)에서 열람 가능

○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http://luris.mltm.go.kr)에서 열람 가능

◉국토교통부고시제2020-2호

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(인천검단 AA34BL)

『공공주택 특별법』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천검단지구 내 AA34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9일

국토교통부장관

1. 사 업 명 : 인천검단 AA34BL 공공주택 건설사업(국민임대)

2. 사업시행자

○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

○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(충무공동)

3. 사업개요

○ 대 지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검단지구 내 AA34BL

○ 사 업 면 적 : 55,778.00㎡

○ 대 지 면 적 : 55,778.00㎡

○ 연 면 적 : 131,803.61㎡